

1. 개정이유

민원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민원처리기준표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민원 제출서를 간소화 하기 위해 별지 서식을 개정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원서류 간소화에 따른 근거규정 정비(안 제3조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에 대해서는 민원 신청 시 구비서류 목록에서 삭제하여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급계약서 사본(공사비명세서를 포함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사업자등록증”을 “(제1
호와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확인증(건설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을 “도급계약서
사본(공사비명세서를 포함한다)을”로, “각각 제출”을 “제출”로 하고, 같
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사업자등
등록증”을 “(제1호와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

단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을 “도급계약서 사본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확인증(건설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건설업면허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19조 중 “다른 개산보험료”를 “따라 개산보험료”로, “경정청구는”을 “경정청구를 하려는 사업주는”으로, “따른다”를 “경정청구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최초 보험료신고서 사본 및 수정신고”를 “수정신고”로 한다.

제35조제4항 중 “폐지신고서에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와 별지 제45호서식의 체납사업장 보고서를 첨부하여”를 “폐지신고서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의2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6호 서

식, 별지 제24호 서식, 별지 제25호 서식, 별지 제26호 서식, 별지 제30호 서식, 별지 제37호 서식, 별지 제44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5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고인(신청인) 제출서류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1부(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표 초본[고용·산재보험의 경우로서, 신고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인(신청인)이 직접 신고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 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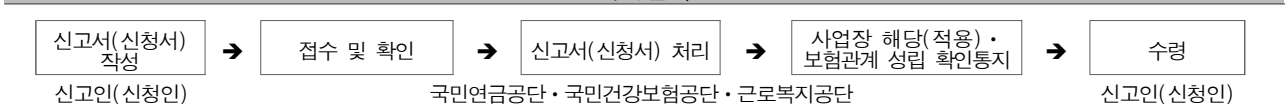
유의사항

1.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건설현장사업장은 건설일용근로자만 가입된 사업장을 말하고, 건설현장사업장으로 적용받으려는 사업장이 일괄경정 고지신청서(해당 기관 서식)를 제출하고 사업장 자격관리 등을 위해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EDI)에 가입하면 일괄경정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자고지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우편고지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3. 건설업 및 별목업의 경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기한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4.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은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장은 법인 단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하나,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 현황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5. 신청 연도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이 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자격취득이 안 된 근로자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자격취득신고서(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관련 문의: 국민연금 국민연금 1355, 고용보험 1588-0075)
7. 연금·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 월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되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이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8. 연금·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액) 수준 등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부담부의 일부가 지원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재산(「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보 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근로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연금·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근로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자료를 수집하여 확인합니다.
9.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연금·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건설업 및 별목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10. 연금·고용보험료는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이후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에 대해 국가가 환수할 수 있습니다.
11.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각각 통보합니다.
12. 국민연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 고용·산재보험 신고(신청) 시 「건설업 및 임업 중 별목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일괄적용 대상 사업은 제외합니다"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자동차체 신청 시 고용·산재보험료의 처리 대상은 월별보험료 및 분할납부보험료(2~4기)이며, 일시납부하는 개산보험료와 분할납부보험료(1기)는 자동차체 처리되지 않습니다. 합산자동차체는 월별보험료 모두 합산하여 출금 원하는 경우 적용에 "[√]"표시, 원하지 않는 경우는 미적용에 "[]"표시를 합니다. 원하는 "이체회밀"에 "[√]"표시하며, 월별보험료인 경우 납기전월 말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5.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 (①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주(건설업은 제외), ②건설업 사업주("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는 제외)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4대 사회보험 고지서는 한 장의 고지서에 합산된 금액·보험별 금액도 표기)으로 발송합니다. 월별보험료를 합산고지하며 고용·산재보험의 일시납부하는 개산보험료와 분할납부보험료는 합산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별 각각의 고지서를 받기 원하시면 지사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공통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자·대표자"란은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업태와 종목"란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3.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는 사업장 환급(반환)금 발생 시 지급받을 은행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4. "자동차체신청"의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는 계좌개설 시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합산자동차 적용여부"는 4대 사회보험 모두 합산하여 출금 원하는 경우 적용에 "[√]"표시, 원하지 않는 경우는 미적용에 "[]"표시를 합니다. 원하는 "이체회밀"에 "[√]"표시하며, 월별보험료인 경우 납기전월 말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전자고지 신청"란은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방법에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를 하고,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를 선택한 경우에는 "수신처"에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정확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으며,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을 선택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Web EDI, 사회보험 EDI"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국민연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적용 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2. "근로자수"란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하고,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3. "가입대상자수"란에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더하되, 18세 미만 근로자도 가입을 희망하면 포함합니다. 4. "분리적용사업장"이란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본점(모사업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가입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분리적용사업장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만 본점 명세를 적습니다.
건강보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적용 연월일"란에는 사업장이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을 적습니다. 2. "회계종목"란은 공무원 및 교직원사업장만 회계종목 사항을 적습니다. ※ 사업장 특성부호: 1. 공무원사업장 3. 사립학교교직원사업장 5. 군 기관 7. 일반근로자사업장 3.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3쪽의 "단위사업장 현황" 및 "영업소 현황"을 적고,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에는 4쪽의 "신고대상사업장 현황"을 계속 적습니다.
고용보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란은 성립 또는 가입 사업 단위의 내용을 적습니다. 2. "우선지원 대상기업"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3.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4.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란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내하도급을 수행하는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의 산재 보험 사업장관리번호(원사업주가 일괄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사업주의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건설업은 제외).
산재보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내하도급"이란 원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수급사업주"란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를 말합니다. 3. "원사업주"란 업무를 도급하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주를 말합니다. 여러 차례의 도급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위의 원사업주를 말합니다. 4. "사내하도급 근로자"란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로부터 도급받거나 위탁 받은 일을 완성하거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고용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5. 원사업주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가장 많은 사업장의 원사업주 원수급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6.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려우면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에게 사업장관리번호 제공에 협조해야 함).

처리절차



공동대표자 현황

번호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취임일	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단위사업장 현황(건강보험)

번호	단위사업장기호	단위사업장명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소 현황(건강보험)

번호	영업소기호	영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관할 단위사업장 및 부서가 있을 때에는 "단위사업장현황", "영업소현황"을 작성합니다.
2. 영업소기호는 사업장에서 영업소별로 부여하여 관리하기 바랍니다.
3. 색상이 어두운 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하므로 신고인(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성립 또는 가입 사업 현황(고용보험)

사업장(2)	명칭	<input type="checkbox"/> 근로자 종사 사업(장) <input type="checkbox"/> 예술인 종사 사업(장) <input type="checkbox"/>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전화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상시근로자 수	명	피보험자 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예술인 수	명	노무제공자 수	명	
	보험관계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3)	명칭	<input type="checkbox"/> 근로자 종사 사업(장) <input type="checkbox"/> 예술인 종사 사업(장) <input type="checkbox"/>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전화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상시근로자 수	명	피보험자 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예술인 수	명	노무제공자 수	명	
	보험관계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4)	명칭	<input type="checkbox"/> 근로자 종사 사업(장) <input type="checkbox"/> 예술인 종사 사업(장) <input type="checkbox"/>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전화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상시근로자 수	명	피보험자 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예술인 수	명	노무제공자 수	명	
	보험관계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5)	명칭	<input type="checkbox"/> 근로자 종사 사업(장) <input type="checkbox"/> 예술인 종사 사업(장) <input type="checkbox"/>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전화번호	
	소재지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상시근로자 수	명	피보험자 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예술인 수	명	노무제공자 수	명	
	보험관계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사업장관리번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공·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안> 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산재보험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	----

예 제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형태	[]법인 []개인	
		소재지	우편번호()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환급(반환) 계좌 사전신고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 보험료 정산 등 환급(반환)금액 발생 시 지급될 계좌입니다. (지급 관련하여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8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3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 (신청 시 괄호에 “√” 표시를 합니다)
-------------	---

보험사무 대행기관	명칭	번호
-----------	----	----

고용보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수		피보험자 수	성립일
	주된 사업장	명칭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비해당	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수		성립일	사업종류코드
	사업의 형태		[] 계속 []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사업기간: -)	
	성립신고일 현재 산업재해발생 여부		[] 있음 [] 없음	
	주된 사업장 여부		[]해당 []비해당	주된 사업장관리번호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 (사내하도급 수급사업주인 경우만 적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8조의2제8항제1호·제48조의3 제8항제1호·제48조의6제1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사용자·대표자) []보험사무대행기관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담당직원	1.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없음
확인사항	2. 주민등록표 초본(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직원 확인사항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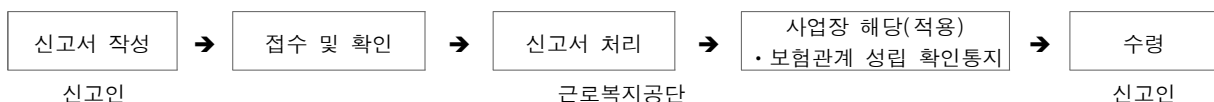
작성방법

공통 사항	<p>※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의 보험관계 성립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 서식을 이용하며, 하나의 사업(장)에 예술인·노무제공자와 근로자가 함께 종사하는 경우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을 이용하여 보험관계 성립을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p> <p>1. "사용자·대표자"란은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p> <p>2. "업태와 종목"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p> <p>3.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는 사업장 환급(반환)금 발생 시 지급받을 은행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p> <p>※ 고용·산재보험료의 자동 납부를 원하시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본부·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고용 보험	<p>1.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수", "피보험자 수"란은 성립 또는 가입 사업 단위의 내용을 적습니다.</p> <p>2. "우선지원 대상기업"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적습니다.</p> <p>3. "주된 사업장관리번호"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적습니다.</p> <p>4.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p>
산재 보험	<p>※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란은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을 고용하여 사내하도급을 수행하는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의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원사업주가 일괄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사업주의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건설업은 제외).</p> <p>1. "노무제공자 수"란은 성립 또는 가입 사업 단위의 내용을 적습니다.</p> <p>2. "사내하도급"이란 원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p> <p>3. "수급사업주"란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를 말합니다.</p> <p>4. "원사업주"란 업무를 도급하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주를 말합니다.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상위의 원사업주를 말합니다.</p> <p>5.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이란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로부터 도급받거나 위탁 받은 일을 완성하거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고용한 근로자나 노무제공자를 말합니다.</p> <p>6. 원사업주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이 가장 많은 사업장의 원사업주 원수급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p> <p>7.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려우면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에게 사업장관리번호 제공에 협조해야 합니다).</p>

고용보험료 지원 안내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금은 아래의 사업규모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다만,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대한 지원금은 사업규모 요건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 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나.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다. 지원이 시작된 이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지 않을 것
 - ※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는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고용보험료 지원은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이 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자격취득이 안 된 피보험자의 경우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자격취득신고서(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고관련 문의: 국번없이 1588-0075).
 - ※ 노무제공자의 경우 기한 내에 월 보수액을 신고한 달만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 월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되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이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료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수준 등에 따라 사업주와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일부가 지원됩니다. 다만, 노무제공자의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자료를 수집하여 확인합니다.
-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있을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77조의3 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신고하는 노무제공자와 해당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의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3 서식을 통한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경우에만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에 대해 환수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처리절차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보험 []보험가입신청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5일		
사업장관리번호		성립신고일 현재 산업재해 발생 여부		[]있음 []없음		
사업주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본사	명칭		사업 형태		[]법인 []개인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우편물 수령지		팩스번호			
현장 (건설공사 및 벌목작업)	현장명		고용보험 업종코드			
	구분		[]도급 []직영		산재보험 업종코드	
	소재지		전화번호			
	건설면허번호		계약일		년 월 일	
	건축허가(신고)번호		계약서상 착공일		년 월 일	
	총공사금액	계약금액 (부가세 제외)		원	실제 착공일	년 월 일
		재료 시가환산액		원	준공 예정일	년 월 일
		합계액		원	벌목재적량	m ³
	발주공사 총금액 (분리발주된 경우)		원	벌목 상시근로자수		명
	발주자 성명		발주자 연락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처리결과 안내, 캠페인(이벤트), 사업홍보물, 고객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우편, 휴대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수신·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처리 사항(아래 사항은 신청인·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가입승인 여부	[]승인	보험관계 성립일	고용보험	년 월 일
	[]불승인		산재보험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신고(신청)인 제출서류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공사비명세서를 포함한다.) 2.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고용보험 임의적용 가입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표 초본[신청(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청(고)인이 직접 신청(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 사항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제1호의 경우는 사본을 말합니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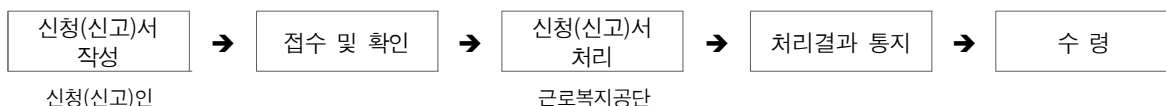
유의사항

1.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별목업은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2. 위 성립신고서는 보험관계 성립일(공사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주는 3월 말(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 이내,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인 경우 공사 종료일 전날까지)까지 고용·산재보험료(「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부담금 포함)를 신고하고, 이를 자진납부해야 합니다.
3. 위 기간이 경과할 때에는 관련 법 규정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보험가입자께서는 사업의 소재지, 가입자 인적사항,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거나 사업장이 휴업·폐업될 경우 우리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5. 보험가입을 신청하여 공단이 승인한 경우 그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게 하려는 원수급인은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서를 우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7. 건설업 및 별목업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일괄적용 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고(신청)하려는 난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란에는 당연적용, 보험가입신청서란에는 임의가입일 경우 "√" 표시를 합니다.
3.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E-mail)를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4. "성립신고일 현재 산업재해발생 여부"란은 제출일 현재 해당 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 있음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없다면 [] 없음에 "√" 로 표시합니다.
5. "우편물 수령지"란은 사업장 소재지와 별도의 주소로 우편물을 받을 경우에만 적습니다.
6. "건축허가(신고)사항"에는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건축공사에 한하여 "건축허가기관"과 "건축허가번호"를 적습니다.
7. "별목 상시근로자수"에는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제1호의 경우는 사본을 말합니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선택)

본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을 위해 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관련 정보 등을 수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관련 제도 홍보자료 제공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 등
-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 성명,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 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기간: 해당 보험관계의 해지 후 1년
- ④ 동의 거부 권리 등 안내: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이 제공하는 산재보험 제도 안내 및 관련 정보 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고(신청)인 제출서류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수수료
담당 직원 확인 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일괄적용 성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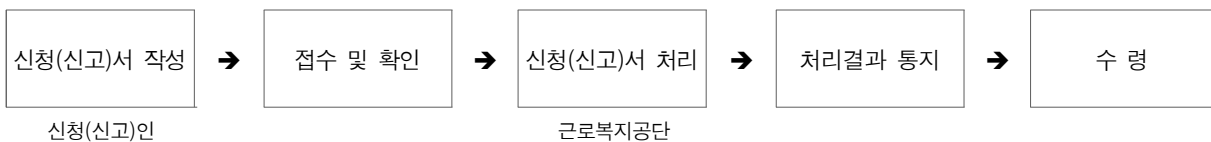
유의사항

1. 일괄적용승인 사업장은 매 보험연도 시작 7일 전까지 해지승인 신청이 없으면 그 이후 보험연도에도 계속 일괄적용됩니다.
2. 일괄적용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에 대한 사업 개시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의 경우 공사현장 또는 지점·지사·공장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제출하고,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산재보험 일괄적용 승인신청의 경우 각각의 사업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에 속해야 합니다.
4.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게 하려는 원수급인은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서를 우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고(신청)하려는 난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주된(본사)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는 주된(본사)사업장이 이미 성립되어 있는 경우, 그 주된(본사) 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3. ‘건설업’란에는 건설업 관련 면허사항과 면허 등록 후 최초로 시행한 공사명세를 적습니다.
4. ‘일반사업’란은 산재보험 일반사업 일괄적용 승인신청의 경우로, 동일한 사업종류에 속하는 일괄적용 대상 사업장을 적습니다 (신고 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일괄적용 현황’란에는 일괄적용을 받는 총 상시근로자 수 및 총 피보험자 수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000-000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전화번호) 팩스)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 시중 은행의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하니 자세한 것은 뒤쪽을 참조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고용·산재보험료 자진납부 안내

- 이 납부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분할 납부 시 제1기분 보험료를 납부할 때 사용합니다.
- 귀하가 내야 할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임금채권 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 부담금 포함)를 아래 **납부서에 직접 적어**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시중 은행, 농수협-회원조합포함)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액의 1/1500의 비율로 연체금이 부과되고, 이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6000의 비율로 가산되어 최고 50/1000까지 부과됩니다.
- 법정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고지·독촉 후 **체납처분절차**가 계속 진행됨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법정납부기한이 지나면 이 납부서를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해야 합니다.
- 건설공사 현장명:

※ 년 월 일 기한인 납부서가 들어 있습니다.(납기 후 사용 불가)
 주소:
 받는 사람:
 바코드 000 -

●사업주께서 자진납부할 보험료를 아래 표의 금액란에 보험사업별로 납부할 정수금 종류(개산, 확정), 3%공제금액, 확정충당액 등을 구분하여 적어 계산한 후 우측 영수증의 납부할 금액 란에 직접 적어 납부 바랍니다.		고용보험료 납부서 검 영수증 (납부자용)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0000-0000-00-0-0-0000000
구분	금액	보험관리번호: 소관: 고용노동부 회계연도: 회계(기금): 고용보험 기금정수관서: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사업주명: 수입정수관계좌 납부할 금액 납부기한
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충당액	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원	
소 계	원	
② 개산보험료	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원	
소 계	원	
③ 개산 3%공제액	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원	
소 계	원	
④ 전자신고 경감	원	
납부할 금액 (①+②-③-④)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발행일(발송일): 수납인

고용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0000-0000-00-0-0-0000000	
보험관리번호: 소관: 고용노동부 회계(기금): 고용보험 회계연도: 기금정수관서: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사업주명: 수입정수관계좌 납부할 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발송일): 수납인	

●사업주께서 자진납부할 보험료를 아래 표의 금액란에 적어 계산한 후 우측 영수증의 납부할 금액 란에 직접 적어 납부 바랍니다.		산재보험료 납부서 검 영수증 (납부자용)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0000-0000-00-0-0-0000000
구분	금액	보험관리번호: 소관: 고용노동부 회계연도: 회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석면피해구제 기금정수관서: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사업주명: 수입정수관계좌 납부할 금액 납부기한
① 확정보험료 또는 확정충당액	원	
② 개산보험료	원	
③ 개산 3%공제	원	
④ 전자신고 경감	원	
납부할 금액 (①+②-③-④)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발행일(발송일): 수납인

산재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전자납부번호 바코드 0000-0000-00-0-0-0000000	
보험관리번호: 소관: 고용노동부 회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석면피해구제 회계연도: 기금정수관서: 근로복지공단 사업장명: 사업주명: 수입정수관계좌 납부할 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일(발송일): 수납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서류	1. 경정청구 사유 증명자료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청하려는 난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법정 신고일"란에는 보험료신고의 법정신고기한을 적습니다.
3. "최초 신고일"란에는 실제로 보험료신고를 한 날을 적습니다.
4. "보험료 종류"란에는 개산·확정보험료 여부 및 해당연도를 적습니다.
5. "보험료액"란에는 경정청구 전·후의 보험료액을 적습니다.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란에는 경정청구에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적습니다.

첨부서류	1. 수정신고 사유 증명자료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고하려는 난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법정 신고일”란에는 보험료신고의 법정신고기한을 적습니다.
3. “최초 신고일”란에는 실제로 보험료신고를 한 날을 적습니다.
4. “보험료 종류”란에는 확정보험료의 해당연도를 적습니다.
5. “보험료액”란에는 수정신고 전·후의 보험료액을 적습니다.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란에는 수정신고에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적습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안>

000-000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전화번호) 팩스)

○ 고용·산재 토털서비스(total.comwel.or.kr)를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 시중 은행의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하니 자세한 것은 뒤쪽을 참조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 고용·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호·제6제3항제3호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라 귀사에서 내야 할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및 석면피해구제부담금 포함) 및 그 밖의 징수금을 자진 납부하지 않아 납입고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시중은행, 농협·수협·회원조합 포함)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정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액의 1/500의 비율로 연체금이 부과되고 이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6000의 비율로 가산되어 최고 50/1000까지 부과됩니다.
 - 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위 납입고지 기한까지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쪽 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사(당)의 총채잔액에 대해 압류 등의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됨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납입고지기한이 지나면 이 고지서를 사용할 수 없으며,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발급하는 고지서를 사용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건설공사현장명: 원
 - 고용·산재보험료 합산금액: 원

※ 년 월 일 기한인 납입고지서가 들어 있습니다.(납기 후 사용불가)
 주소 :
 받는 사람 :
 바코드 000 - 000

고용보험료 납입고지 내역

년도	구분	분기	금액
00	0000000000	00	0000000000원
00	0000000000	00	0000000000원

① 이번 납입고지 금액 : 원

년도	구분	분기	금액
00	0000000000	00	0000000000원
00	0000000000	00	0000000000원

② 이번 납입고지 금액(①)의 납부기한 경과금액 : 원

납부할 금액(납기경과 미납 총액 = ① + ②) 원
 * 납부할 금액에는 납부기한까지의 연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납부기한 이전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미납총액 중 일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다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만일 이 납입고지서가 도달하기 전에 완납하신 경우에는 이 납입고지서를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기금수입 담당이사 직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고용보험료 납입고지서 결 영수증(납부자용)

전자납부번호: 0000-0000-00-0-0-0000000

바코드

보험관리번호: 소관: 고용노동부
 회계연도: 회계(기금): 고용보험
 기금징수기관: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명: 사업주명:

수입징수관계좌	
납부할 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고용보험료 납부영수증서 (수납기관용)

전자납부번호: 0000-0000-00-0-0-0000000

바코드

보험관리번호: 소관: 고용노동부
 회계(기금): 고용보험
 회계연도: 기금징수기관: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명: 사업주명:

수입징수관계좌	
납부할 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산재보험료 납입고지 내역

년도	구분	분기	금액
00	0000000000	00	0000000000원
00	0000000000	00	0000000000원

① 이번 납입고지 금액 : 원

년도	구분	분기	금액
00	0000000000	00	0000000000원
00	0000000000	00	0000000000원

② 이번 납입고지 금액(①)의 납부기한 경과금액 원

납부할 금액(납기경과 미납 총액 = ① + ②) 원
 * 납부할 금액에는 납부기한까지의 연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납부기한 이전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미납총액 중 일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다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만일 이 납입고지서가 도달하기 전에 완납하신 경우에는 이 납입고지서를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근로복지공단 기금수입 담당이사 직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결 영수증(납부자용)

전자납부번호: 0000-0000-00-0-0-0000000

바코드

보험관리번호: 소관: 고용노동부
 회계연도: 회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석면피해구제
 기금징수기관: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명: 사업주명:

수입징수관계좌	
납부할 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산재보험료 영수증서 (수납기관용)

전자납부번호: 0000-0000-00-0-0-0000000

바코드

보험관리번호: 소관: 고용노동부
 회계(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임금채권보장/석면피해구제
 회계연도: 기금징수기관: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명: 사업주명:

수입징수관계좌	
납부할 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납인

발행일(발송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신고인 (대표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인가일	폐지 예정일	
	수입 사업장수	대상 근로자수	
폐지 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험사무대행기관명

소재지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2. (생략)

<신설>

3. (생략)

③ (생략)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소멸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법 제48조의2제8항제1호, 제48조의3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근로자 종사 사업장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건설업 및 별목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 · 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 (제1호와 제3호) -----

1. 2. (현행과 같음)

3.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확인증 (건설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소멸신고) ① -----

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라 한다) 종사사업장인 경우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도급계약서(공사비명세서를 포함한다) 및 건축 또는 용도 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건설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통장 사본(보험료의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2. (생략)

도급계약서 사본(공사비명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

<삭 제>

<삭 제>

②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호와 제3호

1.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생 략)

③ (생 략)

④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일괄 적용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일괄적용 성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도급계약서 사본

2. 건설업면허 사본

<신 설>

⑤ ~ ⑦ (생 략)

제19조(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3.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확인증(건설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도급 계약서 사본을 -----
----- . <후단 삭제>

<삭 제>

<삭 제>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건설업면허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제19조(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의 경정청구) 영 제23조제1항 또는 영 제26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에 따른다.

제23조(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를 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0호서식의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에 최초 보험료신고서 사본 및 수정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35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신청서 등) ① ~ 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영 제47조 제5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인가신청서(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보험사무대행기관 폐지

의 경정청구) -----
----- 따라 개산보험료 ----- 경정청구
구를 하려는 사업주는 -----

경정청구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 -

----- 수정
신고 -----

1. ~ 4. (현행과 같음)

제35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신청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폐지

신고서에 제2항에 따라 발급받
은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와
별지 제45호서식의 체납사업장
보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
하여야 한다.

신고서를 -----

-----.